

의안번호	2205127
의 퇴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4.12.10.
추 계 번호	24D576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26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95만원(연평균 39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18세로 조정 (안 제3조)	126	-	-	68	-	195	39

주 1. 투표일을 12월 31일로 가정했을 때 2025년 경기도 및 2028년 서울에서 18세가 되는 인구 모두 투표권자에 포함되나, 투표일을 다르게 가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감소 예상

2. 본 추계 결과는 주민소환투표의 투표권자의 수, 투표용지 인쇄단가, 투표율의 증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최근 5년간 주민소환투표¹⁾ 실시 현황을 고려하여 2025년에 경기도와 2028년에 서울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개정안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주민소환투표권자²⁾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시 투표권자의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임
 - 향후 주민소환투표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 실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신규 투표권자 진입에 따른 투표용지 인쇄비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2019~2023년) 주민소환투표는 2019년, 2021년에 2회 실시됨

[표 2] 최근 5년간 주민소환투표 실시 현황: 2019~2023년

연번	소환대상자	투표일	실시지역	투표율	결 과	관리비용 (백만원)
1	포항시의원 ○○○	2019.12.18.	경북 포항시	21.8%	미개표 (개표요건 미충족)	317
	포항시의원 △△△					
2	과천시장 □□□	2021.6.31.	경기 과천시	21.7%	미개표 (개표요건 미충족)	44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과

1) 주민소환투표는 문제가 있는 지방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제재하는 제도임
 2)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주민소환투표의 투표권자 수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은 투표용지 인쇄비, 선거공보물 발송비³⁾, 투표소 설치비, 투·개표관리 인력 증원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투표소 수나 투·개표 관리인력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표용지 인쇄비에 한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⁴⁾
 - 참고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⁵⁾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투표·개표절차는 「공직선거법」⁶⁾을 준용하며, 「공직선거법」에서는 2020년부터 18세 이상이 투표권자로 추가되었음
 - 2024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소수나 투·개표관리 인력 현황을 보면 18세 인구 441,003명⁷⁾, 투표소수는 총 14,259개소이므로 투표소당 18세 인구는 30명으로 추정됨. 따라서 주민투표에서 18세 인구가 추가되더라도 투표소 수나 투·개표 관리 인력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2024.11. 기준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⁸⁾와 서울⁹⁾에서 2025년과 2028년에 주민소환투표를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투표권자 수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인 투표용지 인쇄비를 추계함
 - 참고로 추계기간 동안의 18세 인구 장래추계는 다음과 같음

3) 선거공보물은 세대별로 발송되므로 18세 이상으로 투표권자 수를 확대하더라도 18세 1인으로 구성된 세대가 많지 않아 선거공보물 발송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 국회의원선거관리 예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인쇄비가 선거권자 수에 정비례하여 늘어나는 비목에 해당함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주민투표법」 제19조(투표·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개표구의 설치, 투표·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 2020.1.14.>

1.~2. (생략)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2.12., 2011.11.7., 2014.1.17., 2015.8.13., 2020.1.14.>

1.~3. (생략)

7) 2024년 6월 기준, 통계청

8) 1,369만명, 2024.11. 기준, 통계청

9) 933만명, 2024.11. 기준, 통계청

[표 3] 18세 인구(개정안에 따른 투표권자) 장래추계: 2025~2029년

(단위: 천명)

	2025	2026	2027	2028	2029
18세	457	485	451	444	48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3.12.

□ 개정안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시 2025년에 경기도와 2028년에 서울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95만원으로 예상됨

- 투표용지 인쇄단가: 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 편성 기준 42원으로 가정
- 증가된 투표권자 수
 - 경기도: 2024.11. 기준 경기도의 17세 인구인 139,231명이 변동없이 2025년에 18세가 된다고 가정
 - 서울: 2024.11. 기준 18세 인구인 77,867명에 [표 3]의 18세 인구 장래추계의 감소율(2025~2028년)인 연간 0.96%를 적용하여 2028년 74,861명으로 가정
- 투표율: 2021년에 실시된 주민소환투표 투표율인 21.7%를 준용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경기도	투표용지 인쇄단가(A, 원)	42	-	-	-	-	-
	증가된 투표권자 수(B, 명)	139,231	-	-	-	-	-
	투표율(C, %)	21.7	-	-	-	-	-
	소 계(D=A×B×C, 천원)	1,268	-	-	-	-	1,268
서울	투표용지 인쇄단가(E, 원)	-	-	-	42	-	-
	증가된 투표권자 수(F, 명)	-	-	-	74,861	-	-
	투표율(G, %)	-	-	-	21.7	-	-
	소 계(H=E×G×F, 천원)	-	-	-	682	-	682
합 계(I=D+H, 천원)		1,268	-	-	682	-	1,950

주 1. 투표일을 12월 31일로 가정했을 때 2025년 경기도 및 2028년 서울에서 18세가 되는 인구 모두 투표권자에 포함되나, 투표일을 다르게 가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감소 예상

2. 본 추계 결과는 주민소환투표의 투표권자의 수, 투표용지 인쇄단가, 투표율의 증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주민소환투표의 투표권자의 수, 투표용지 인쇄단가, 투표율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